

제 1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서
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
상법 제363조 및 회사 정관 제22조에 의거 제13기(2024.01.01~2024.12.31) 정기 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※ 발행주식 총수의 1% 이하 소유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542조의4 및 정관 제22조 2항에 의거하여 이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
- 아 래 -

1. 일 시 : 2025년 3월 26일(수) 오전 9시

2. 장 소 :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로 40번길 26 (금토동), 세미플렉스타워 지하 1층 회의실

3. 회의 목적사항

가. 보고사항

- ① 영업보고
- ② 감사보고
-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

나. 부의안건

제1호 의안 : 제 13기 (2024.01.01~2024.12.31) 재무제표(연결재무제표 포함)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[안] 승인의 건

제2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

제3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

제3-1호 의안 : 사외이사 이원석 선임의 건

제4호 의안 : 감사 선임의 건

제4-1호 의안 : 감사 이양원 선임의 건

제5호 의안 :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

제6호 의안 :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

4. 경영 참고사항의 비치

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경영 참고사항을 우리회사 본점 및 명의개서대행회사(국민은행 증권대행부)에 비치하고 금융위

원회, 한국거래소에 전자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5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
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
6.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

당사는「상법」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,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.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
가. 전자투표관리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

- <http://vote.samsungpop.com>

나. 전자투표 행사 기간

- 2025년 3월 14일 09시 ~ 2025년 3월 25일 17시(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)

다.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

- 본인 인증 방법은 증권용·범용 공동인증서 인증, 카카오페이 인증, PASS앱 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

라. 수정동의안 처리 :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

7.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

- 직접행사 : 신분증
- 대리행사 :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 날인), 대리인 신분증

※ 주주총회 기념품은 별도 지급하지 않습니다.

2025년 3월 11일

주식회사 가온칩스

대표이사 정 규 동 (직인생략)

■ 제 13기 재무제표(연결재무제표 포함)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(案) 승인의 건

- 소집통지서 발송일 기준 현재 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않은 바, 재무제표 첨부를 생략합니다.
- 당사의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1주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(<http://dart.fss.or.kr>)에 공시하고, 회사 홈페이지(<http://www.gaonchips.com>)에 게재할 예정입니다

■ 정관 일부 변경의 건

- 별첨 #1 정관변경 신규비교표 참조

■ 이사 선임의 건

가. 후보자의 성명 · 생년월일 · 추천인 · 최대주주와의 관계 · 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

후보자성명	생년월일	사외이사 후보자여부	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	최대주주와의 관계	추천인
이원석	1978.09	사외이사	해당사항 없음	-	이사회
총 (1) 명					

나. 후보자의 주된직업 · 세부경력 · 해당법인과의 최근 3 년간 거래내역

후보자성명	주된직업	세부경력		해당법인과의 최근 3 년간 거래내역
		기간	내용	
이원석	변호사	2014 년 ~ 현재	법무법인 대승 파트너 변호사	해당사항 없음

■ 감사 선임의 건

가. 후보자의 성명 · 생년월일 · 추천인 · 최대주주와의 관계

후보자성명	생년월일	최대주주와의 관계	추천인
이양원	1974.07	-	이사회
총 (1) 명			

나. 후보자의 주된직업 · 세부경력 · 해당법인과의 최근 3 년간 거래내역

후보자성명	주된직업	세부경력		해당법인과의 최근 3 년간 거래내역
		기간	내용	
이양원	변호사	2018.05~현재	법무법인 세한 파트너 변호사	해당사항 없음

■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

이사의 수 (사외이사수)	4 명 (1 명)
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	3,000 백만원

∴ 전기 승인금액과 동일합니다.

■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

감사의 수	1
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	100 백만원

∴ 전기 승인금액과 동일합니다.

별첨 #1 정관개정 신규비교표

#	항목	현행	변경	비고
1	제 4조 (광고방법)	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(http://www.gaonchips.com) 에 한다. 다만 전 산장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 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 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한국경제신문에 게 재한다.	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(http://www.gaonchips.com)에 한다. 다만 전산 장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 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 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 다.	조문 정비
2	제 8조 (주권의 발행과 종류)	① ~ ② 생략 ③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, 의결권 배제 또 는 제한에 관한 주식, 상환주식, 전환주식 및 이 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.	① ~ ② 생략 ③ 삭제	종류주식 조문 정비 (제9조의 1항으 로 대체)
3	제 9조 (종류주식의 수 와 내용)	① 회사는 이익배당,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 환과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(이하 이조에서 “종류 주식”이라 한다)을 발행할 수 있다. ② ~ ⑩ 생략 ⑪ ~ ⑫ 신설	①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, 의결권 배제 또 는 제한에 관한 주식, 상환주식, 전환주식 및 이 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. ② ~ ⑩ 현행 동일 ⑪ 종류주식의 주주는 회사가 청산하는 경우 잔 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보 통주식의 주주에 우선하여 분배 받는다. 만약, 보 통주식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율이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율을 초과하 는 경우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은 그 초 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하 여 잔여재산을 분배 받는다. ⑫ 제11항에 따라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 식에 대하여 우선 분배가 이루어진 후 잔여재산 은 보통주식의 주주들이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분 배한다.	종류주식 조문 정비 잔여재산분배 내 용 추가 (기존 정관상 잔 여재산 배분에 관한 우선주식 관련 내용 부재)
4	제 10조 (신주인수권)	① 생략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. ③ ~ ④ 생략 ⑤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 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416조제1호, 제2호, 제 2호의2,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 고하여야 한다.	① 현행 동일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정한 자(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 한다)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. ③ ~ ④ 현행 동일 ⑤ 제2항에 따라 특정한 자(이 회사의 주주를 포 함한다)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416조제1호, 제2호, 제2호의2, 제3호 및 제4호 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.	발행대상 확대

별첨 #1 정관개정 신규비교표

5	제 17조 (전환사채의 발행)	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 1.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. 회사가 자금조달 또는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등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.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, 연구개발, 생산·판매·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생략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3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.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12조(신주의 동등배당)의 규정을 준용한다.	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특정한 자(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)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 1. 사채의 액면총액이 1,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<u>일반공모의 방법</u>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. 사채의 액면총액이 1,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<u>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</u>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. 사채의 액면총액이 1,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<u>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, 연구개발, 생산·판매·자본제휴</u>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현행 동일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.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2조(신주의 동등배당)의 규정을 준용한다.	발행대상 확대 회사의 성장성 및 자금조달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전환사채 총액 확대 전환청구 가능 기간 변경 (증발공 규정 준용) 제12조와 연관성 없는 이자의 지급 내용 삭제
6	제 18조 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)	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 1.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. 회사가 자금조달 또는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등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.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, 연구개발, 생산·판매·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~ ③ 생략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.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 (이하 생략)	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특정한 자(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)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 1. 사채의 액면총액이 1,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<u>일반공모의 방법</u>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. 사채의 액면총액이 1,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<u>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</u>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. 사채의 액면총액이 1,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<u>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, 연구개발, 생산·판매·자본제휴</u>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~ ③ 현행 동일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.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 (이하 생략)	발행대상 확대 회사의 성장성 및 자금조달 용이성을 고려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 총액 확대 신주인수권 행사 기간 변경 (증발공 규정 준용)

별첨 #1 정관개정 신규비교표

7	제 19조 (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)	제14조(명의개서대리인) 및 본 정관 제15조(주주 등의 주소,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)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. 다만,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준용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.	제14조(명의개서대리인) 및 제15조(주주 등의 주소,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)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. 다만,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준용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.	조문 정비
8	제 38조 (이사회의 구성과 소집)	① 생략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(사장)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.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 ③ ~ ④ 생략	① 현행 동일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(사장)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.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 ③ ~ ④ 현행 동일	이사회 소집통지 기한 변경
9	제 44조 (감사의 수)	회사는 1인 이상의 감사를 둔다. 단, 자본금이 10억원에 이르기 전까지는 감사의 선임은 회사의 선택적 사항으로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.	회사는 1인 이상의 감사를 둔다.	회사의 자본금과 무관한 내용 삭제
10	부칙 <2025.03.26.>	신설	제1조(시행일) 본 정관은 2025년 0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	